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052)

2020. 12. 1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52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김인호 의원 발의(9명 찬성)

나. 제출일자 : 2020년 10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0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차별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신설).

나. 감염병 병력자에 관한 사회복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감염자와 그 가족 등 격리대상자들에 대한 비방과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차별을 금지하고 감염병 병력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혐오 등 감염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병이라는 재난적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었음.¹⁾
- 코로나 19 확산 초창기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집단이 낙인과 차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음.²⁾
 - 지난 3월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 대구 주민 등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이런 낙인효과로 인해 감염자 및 접촉자들을 숨게 만들어 감염병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1)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2020.06.23.,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발표 내용

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20.4.27.) 「COVID-19지침」, 『COVID-19 관련 국제인권규범모음집(국가인권위 편역)』

- 동 조례 개정안 제33조에서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고, 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34조에서 감염병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시책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관련 교육의 실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33조(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34조(사회복귀 지원 등) ①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p>

을 작성 및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써 감염병환자 등의 기

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감염병 완치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⁴⁾제1항에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등의 질병자들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시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질병 완치 이후 감염병 병력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의 경우 감염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적인 관계가 드러나게 됨으로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음. 코로나 19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금지 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완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4)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종합의견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법제도 및 정책 등은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치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완치 후 감염병 병력자들의 인권침해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관련 정책 등이 부재한 상황임.
- 동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감염병 병력자들의 인권 침해와 사회 복귀 등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음.